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3.22)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1
---	---------------------	---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3. 06
- 나. 제출자 : 조기원, 강창남, 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03. 11

2. 제안이유

- 거창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거창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기본이념 (안 제3조)

-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

나.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군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

다.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군수는 「여성발전 기본법」의 제7조에 따라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마.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안 제9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바. 성평등 촉진 시책 (안 제16조 ~ 제36조)

-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6조)
-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 인 시책을 마련 (안 제17조)
-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안 제7조)
- 여성발전 기본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안 제31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안 제18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안 제19조제3항)
-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5조(안 제37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안 제19조제5항)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안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3. 3. 8~ 2013. 3. 14)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가 공포되면 군은 어느 한쪽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나. 군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해 자문함으로써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다. 제정 내용은 상위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음.

라.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이 가속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여성 정책의 변화 반영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의 기본적 사항들을 정하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 제정에 따라 추진 근거를 규정하여 성평등 관점이 균정 전반의 사업 및 정책에 반영 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참고자료>

■ 관계법령발췌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전문개정 2008.6.13]

제14조(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

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5.24]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 일부개정]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6호, 2011.9.15, 제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30] [법률 제9892호, 2009.12.30, 일부개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2.3.9] [법률 제10991호, 2011.8.4, 일부개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통계법

[시행 2010.7.1] [법률 제10196호, 2010.3.31, 일부개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